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법제처 제공 -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항목을 추가하고,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며,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 등이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의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원료물질(原料物質)”을 “원료(原料)”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의 재질·색상·무게, 재활용의 용이성 등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의4를 삭제하고, 제9조의3 및 제9조의5를 각각 제9조의4 및 제9조의3으로 하며, 제9조의3(중전의 제9조의5)제1항 중 “제9조의4제2항”을 “제9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9조의4(중전의 제9조의3)제1항 중 “포장재 재질·구조”를 “포장재의 재질·색상·무게”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 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2. 다회용기(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제17조의2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분담금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



포장과 법률

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경매가 개시된 경우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7. 재활용부과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⑪ 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제25조의8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정기검사를 받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기관에 수료를 내야 한다.

제25조의11제2항 중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제33조의3(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의 구매촉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의 우선 구매를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에 관한 정보
2.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 구매 목표의 설정 및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 구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5제3항 중 “원료물질”을 “원료”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의2”를 “제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 및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3.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의 산출 또는 면제의 판단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사항

제39조의2제1호 중 “제9조의4제2항”을 “제9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5조의8제3항”을 “제25조의8제4항”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2호의2 중 “제9조의3제2항”을 “제9조의4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3 중 “제9조의3제3항”을 “제9조의4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5조의8, 제25조의11, 제37조 및 제39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과 평가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포장재에 대한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과 평가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의2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른다.